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관세법 제 7 조 제 3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안
료 색 소 의 관 세 율 변 경 에 관 한 규 정
폐 지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료색소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료색소에 적용되는 잠정세율이 1989년부터 폐지되어 안료색소에 대한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관세법 제7조제3

항의규정에 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 관한규정 폐지령안

관세법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 관한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431